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36
----------	------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10.01.0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함

o 조례 제916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 1년 연장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덧붙임: 1.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타참고자료 (관계법령)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도축세
7. 담배소비세

제15조를 제15조의 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 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 2(기존 제15조)의 제목 "세율 및 세액"을 "세율"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	200,000원

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 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15조의 2(기존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 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5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 2(제16조의 2부터 제16조의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제16조의 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의 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6조의 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3을 준용한다.

제2장제4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제60조, 제62조 및 제63조)을 삭제한다.

조례 제916호 충주시 시세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같은 장 제1절의 2의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보통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도축세 7. 담배소비세 <p>③목적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도축세 7. 담배소비세 <p>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제15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15조(세율 및 세액) ①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개인</p> <p>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읍·면·동) : 5,000원</p> <p>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을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기타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을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p>제15조의 2(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p> <p>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p> <p>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기타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을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p>②소득세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p>	<p>②법 제176조의 4제1항에 따른 재산분</p>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 신설 ></p> <p>제4절 농업소득세</p> <p>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제16조의 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847 781 1401 956">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세분</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법인세분</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 </tr> </tbody> </table> <p>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p>제16조의 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3을 준용한다.</p> <p>< 삭제 ></p> <p>< 삭제 ></p>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현행	개정안
<p>제30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삭제 ></p>
<p>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삭제 ></p>
<p>제32조(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 삭제 ></p>

현행	개정안
<p>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3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 ①작물별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p>	
<p>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사업소세</p> <p>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p><삭제></p> <p><삭제></p>
<p>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축물로 된 때</u></p> <p>5.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6. <u>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p> <p>7. <u>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p> <p><u>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함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u></p> <p>1. <u>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u></p> <p>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p> <p>3.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p> <p>6. <u>기타 필요한 사항</u></p> <p><부칙> 제2조 (적용기한) 제57조의 개정규정은 <u>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u></p>	<p><삭제></p> <p><부칙> 제2조 (적용기한) ----- -----<u>2009년도 및 2010년도</u>----- -----</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절 주민세

제1관 통칙 <개정 2010.1.1>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010.1.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0.1.1>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전문개정 2010.1.1]

제175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2010.1.1>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2관 균등분 <개정 2010.1.1>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10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관 재산분 <신설 2010.1.1>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절의2 지방소득세 <개정 2010.1.1>

제1관 통칙 <신설 2010.1.1>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2관 소득분 <개정 2010.1.1>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 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 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2010.1.1>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2010.1.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2010.1.1>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2010.1.1>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1.1>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2010.1.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2010.1.1>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1>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79조(소액부징수)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 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1>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28, 2005.12.31>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5.12.31, 2010.1.1>

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10.1.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제179조의4(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3관 종업원분 <신설 2010.1.1>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237조 【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